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3-0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25나205938 채무부존재확인
원고, 피항소인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
피고, 항소인	B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
제 1 심 판 결	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. 24. 선고 2023가합68324 판결
변 론 종 결	2025. 12. 17.
판 결 선 고	2026. 2. 4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2023. 3. 21.부터 2023. 3. 22.까지 사이의 피고에 대한 하지정맥류 치료와 관련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3-05

별지 제7항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양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3-05

판사 최성보

판사 이준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3-05

별지

보험계약

1. 보험종목 : E

2. 계약번호 : F

3. 보험기간 : 2010. 7. 23.부터 2057. 7. 23.까지

4. 보험계약자 : B

5. 피보험자 : B

6. 사망수익자/기타수익자 : 법정상속인/B

7. 담보 및 가입금액 : 질병입원의료비담보 50,000,000원

질병입원비담보 20,000원

8. 월납보험료 : 64,893원